

작성일자 8/24/2025 (월/일/년)

버전 12.0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제품 코드 : 00359021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용도 : 전문적 용도, 사용시 분무.
물질/혼합물의 용도 : 코팅.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 본 제품은 소비자 용으로 제작, 표시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공급자 또는 수입자 정보 : PPG SSC (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이메일 주소 : Korea.MSDS@PPG.COM
긴급전화번호 : +82-52-210-8331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분류 3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피부 과민성 - 분류 1
발암성 - 분류 1A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이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 H226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중추신경계, 신장, 간)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 문구

제품명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2. 유해성·위험성

- 예방

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 보호의와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210

-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금연

P241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P241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십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60

-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 완전히 씻으시오.
- 대응

370 + P378

-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절대로 물을 사용하지 마시오.

P308 + 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 조언 또는 치료를 받으십시오.

P304 + P312

- 흡입하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 + P361 + 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십시오].

P333 + 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를 받으십시오.

P305 + P351 + P338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 + 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P321

- (라벨 참조). 처치를 하시오.
- 저장

P403 + 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 폐기

P501

- 내용물과 용기는 모든 지역,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접촉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을 유발함.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CAS 번호/기타 정보

CAS번호 : 해당 없음.

화학물질명	관용명	식별자	%
산화규소 (<10 microns)	QUARTZ (<10 microns)	CAS: 14808-60-7	30 - <40
에폭시 수지	EPOXY RESIN	EC: 238-878-4 CAS: SUB110652	20 - <30
크실렌	XYLENES	CAS: 1330-20-7	10 - <20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 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MW ≤ 700)	EPOXY RESIN (AVERAGE MOLECULAR WT < 700)	EC: 215-535-7 CAS: 25068-38-6	5 - <10
소우프스톤	Talc, non-asbestos form	EC: 500-033-5 CAS: 14807-96-6	5 - <10
이산화 티타늄	TITANIUM DIOXIDE	EC: 238-877-9 CAS: 13463-67-7 EC: 236-675-5	5 - <1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에틸 벤젠	ETHYLBENZENE	CAS: 100-41-4 EC: 202-849-4	1 - <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CAS: 78-83-1 EC: 201-148-0	1 - <5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CAS: 107-98-2 EC: 203-539-1	1 - <5
피마자 기름, 수소화된	CASTOR OIL, HYDROGENATED	CAS: 8001-78-3 EC: 232-292-2	0.1 - <1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및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즉시 흐르는 물에 눈꺼풀을 벌리면서 15분 이상 세안할 것.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적합한 피부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용제나 신너를 사용하지 말 것.
- 다. 흡입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피해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호흡하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정지가 일어난 경우, 훈련 받은 사람이 인공호흡 또는 산소 공급을 할 것.
- 라. 먹었을 때
: 섭취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용기 또는 라벨을 보일 것. 피해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토하게 하지 마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많은 양을 먹었거나 흡입했을 경우 해독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할 것.
-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흠(fumes)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구조대원은 적절한 마스크 또는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오염된 옷을 벗기전에 옷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거나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분말화학소화제, 탄산 가스, 물분무 또는 포말을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
: 봉상주수(water jet)를 사용하지 말 것.

제품명 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

정 유해성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탄소 산화물

할로겐 화합물

금속 산화물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

구

소방 조치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사항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대량 누출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대량 누출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대량 누출

제품명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7. 취급 및 저장방법

기 또는 혼촉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진 승인된 대체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밀폐하여 보관할 것. 열, 스파크, 불꽃, 기타 발화원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보관 및 사용할 것. 방폭형의 전기장치(환기설비, 조명용구, 물질 취급 용구)를 사용할 것.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정전기 방지대책을 취할 것. 빈 용기가 제품 잔류물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유해할 수 있음. 용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아할 조건을 포함함) : 다음 온도 사이에서 보관할 것: 0 – 35℃ (32 – 95°F).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격리되고 인가된 구역에 저장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산화성 물질로부터 격리시킬 것.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8.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누출기준

성분명	누출기준
산화규소 (<10 micron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TWA 8 시간: 0.05 mg/m³. 성상: 호흡 가능한 비울.
크실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크실렌] STEL 15 분: 150 ppm. TWA 8 시간: 100 ppm.
소우프스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TWA 8 시간: 2 mg/m³ (석면로). 성상: 섬유.
이산화 티타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TWA 8 시간: 10 mg/m³.
에틸 벤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STEL 15 분: 125 ppm. TWA 8 시간: 100 ppm.
이소부틸 알코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TWA 8 시간: 50 ppm.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STEL 15 분: 150 ppm. TWA 8 시간: 100 ppm.

권고되는 모니터링 과정 : 적절한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참조를 해야 함. 유해 물질 결정방법에 관한 국가 지침 문서의 참조가 필요함.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공정을 둘러 싸거나 국소 배기설비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권장 또는 규정된 한도 이하로 유지할 것. 공학적 관리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농도를 폭발 한계 이내로 할 것. 폭발 방지 환기설비를 사용할 것.

환경 노출 관리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흡 세정기 (fume scrubbers),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다.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타. 용해도	:	매체	결과
		냉수	용해되지 않음
수용해도	:	자료 없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비중	:	1.4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자연발화 온도	:		
		성분명	℃
		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270
		°F	518
		방법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점도	:	이나믹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40℃ (104°F)): >21 mm²/s (>21 cSt)	
흐름 시간(ISO 2431)	:	자료 없음.	
분자량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제품은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고온에 노출될 경우 유해한 분해 물질을 발생할 수 있음.
다. 피해야 할 물질	:	강한 발열반응을 피하도록 다음 물질을 멀리 둘 것: 산화제, 강알칼리, 강산.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조건에 따라, 분해 생성물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탄소 산화물, 할로겐 화합물, 금속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료 없음.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흡입	:	흡입하면 유해함.
먹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피부 탈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과다 노출 징후/증상		
흡입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먹었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제품명

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11. 독성에 관한 정보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자극

홍조

건조함

갈라짐

눈에 들어갔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통증 또는 자극

눈물이 나옴

홍조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투여량	노출
실렌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 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MW ≤ 700)	LD50 경피	토끼	1.7 g/kg	—
	LD50 경구	랫트	4.3 g/kg	—
	LD50 경피	토끼	>2 g/kg	—
이산화 티타늄	LD50 경구	랫트	>2 g/kg	—
	LC50 흡입 먼지와 연무	랫트	>6.82 mg/l	4 시간
	LD50 경피	토끼	>5000 mg/kg	—
에틸 벤젠	LD50 경구	랫트	>5000 mg/kg	—
	LC50 흡입 증기	랫트	17.8 mg/l	4 시간
	LD50 경피	토끼	17.8 g/kg	—
이소부틸 알코올	LD50 경구	랫트	3.5 g/kg	—
	LC50 흡입 증기	랫트	24.6 mg/l	4 시간
	LD50 경피	토끼	2460 mg/kg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LD50 경구	랫트	2830 mg/kg	—
	LC50 흡입 증기	랫트	>7000 ppm	6 시간
	LD50 경피	토끼	13 g/kg	—
피마자 기름, 수소화된	LD50 경구	랫트	5.2 g/kg	—
	LD50 경구	랫트	>10 g/kg	—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자극성/부식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시험 결과	노출	관찰
실렌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 놀 중합체 (MW ≤ 700)	피부 - 보통정도의 자극성 물질	토끼	—	24 시간 500 mg	—
	눈 - 약한 자극	토끼	—	—	—
	피부 - 약한 자극	토끼	—	—	—

- 결론/요약

피부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눈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호흡기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과민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제품/성분명	노출 경로	생물종	결과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MW ≤ 700)	피부	마우스	과민성물질

결론/요약

피부

호흡기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변이원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발암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생식독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최기형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실렌	분류 3	-	마취작용
소우프스톤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이소부틸 알코올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	마취작용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분류 3	-	마취작용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실렌	분류 1	-	중추신경계, 신장, 간

흡인 유해성

이름	결과
에틸 벤젠	흡인 유해성 - 분류 1

만성 징후와 증상

일반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접촉되면 피부 부가 탈지되어 자극, 갈라짐 및/또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한번 항원에 민감해지면 나중에 매우 소량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발암성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암의 위험성은 노출 기간과 수준에 달려 있음.

변이원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생식독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추가 정보

제품명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접촉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을 유발함. 샌딩 및 분쇄 된 분진은 흡입시 유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의 증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계의 자극이나 영구적인 뇌 및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노출 한도 이상의 증기/농축 공기를 흡입하면 두통, 나른함 및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부 및 의복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화학물질명	식별자	GHS 분류
산화규소 (<10 microns) 에폭시 수지 크실렌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 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MW ≤ 700) 소우프스톤 이산화 티타늄 에틸 벤젠 이소부틸 알코올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피마자 기름, 수소화된	CAS: 14808-60-7 EC: 238-878-4 CAS: SUB110652 CAS: 1330-20-7 EC: 215-535-7 CAS: 25068-38-6 EC: 500-033-5 CAS: 14807-96-6 EC: 238-877-9 CAS: 13463-67-7 EC: 236-675-5 CAS: 100-41-4 EC: 202-849-4 CAS: 78-83-1 EC: 201-148-0 CAS: 107-98-2 EC: 203-539-1 CAS: 8001-78-3 EC: 232-292-2	발암성 - 분류 1A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피부 과민성 - 분류 1B 인화성 액체 - 분류 3 급성 독성 (경피) - 분류 4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마취작용)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1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피부 과민성 - 분류 1B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발암성 - 분류 2 인화성 액체 - 분류 2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발암성 - 분류 2 흡인 유해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인화성 액체 - 분류 3 피부 자극성 - 분류 2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마취작용) - 분류 3 인화성 액체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마취작용) - 분류 3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 분류 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제품명

시그마카바 456 주제 1128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노출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 4,4-(1-메틸에틸리덴) 비스 페놀 중합체 (MW ≤ 700)	급성 LC50 1.8 mg/l	물벼룩	48 시간
이산화 티타늄	만성 NOEC 0.3 mg/l	물벼룩	21 일
에틸 벤젠	급성 LC50 >100 mg/l 담수	물벼룩 - <i>Daphnia magna</i>	48 시간
	급성 EC50 1.8 mg/l 담수	물벼룩	48 시간
이소부틸 알코올	만성 NOEC 1 mg/l 담수	물벼룩 - <i>Ceriodaphnia dubia</i>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급성 EC50 1100 mg/l	물벼룩	48 시간
	급성 LC50 23300 mg/l	물벼룩	48 시간
피마자 기름, 수소화된	급성 LC50 >4500 mg/l 담수	물고기	96 시간
	급성 LC50 >100 mg/l	물고기	96 시간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제품/성분명	시험	결과	투여량	접종물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 4,4-(1-메틸에틸리덴) 비스 페놀 중합체 (MW ≤ 700)	OECD 301F	5 % - 28 일	-	-
에틸 벤젠	-	79 % - 쉬움 - 10 일	-	-

제품/성분명	수중 반감기	광분해	생물 분해성
 실렌	-	-	쉬움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 4,4-(1-메틸에틸리덴) 비스 페놀 중합체 (MW ≤ 700)	-	-	쉽지 않음
에틸 벤젠	-	-	쉬움

다. 생물 농축성

제품/성분명	LogP _{ow}	BCF	잠재적 생물 농축성
 실렌	3.12	7.4 - 18.5	낮음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 4,4-(1-메틸에틸리덴) 비스 페놀 중합체 (MW ≤ 700)	3	31	낮음
에틸 벤젠	3.6	79.43	낮음
이소부틸 알코올	1	-	낮음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1	-	낮음
피마자 기름, 수소화된	18.75	-	높음

라. 토양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 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 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세척되거나 행귀지지 않은 빈용기를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제품 잔량으로부터의 증기가 용기 내에 고인화성 또는 폭발성 공기를 생성할 수 있음. 내부를 철저히 세척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된 용기를 자르거나, 용접하거나 그라인드 작업 하지 말 것.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IMDG	IATA
가. 유엔 번호	UN1263	UN1263	UN126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PAINT	PAINT	PAINT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3	3
라. 용기등급	III	III	III
환경 유해성	해당없음.	No.	No.
마. 해양 오염 물질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추가 정보

- UN
: 확인된 바 없음.
- IMDG
: None identified.
- IATA
: 확인된 바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IMO 협정에 따른 벌크 운송 : 해당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 해당 없음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 해당 없음
(제조 등의 허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들은 작업노출기준이 있음:

☑️화규소 (<10 microns)

크실렌

소우프스톤

이산화 티타늄

에틸 벤젠

이소부틸 알코올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해당 없음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석영, 크실렌, 활석/습 스톤 / 소우프스톤, 이산화티타늄, 에틸 벤젠, 이소부틸 알코올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크실렌 까지의물질을용량비율1퍼센트이상함유
[별표 22] 특수건강진단한혼합물, 에틸벤젠, 이소부틸 알코올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크실렌, 이산화티타늄, 에틸벤젠, 이소부틸 알코올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11항(화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자일렌 (o-,m-,p- 이성질체 포함), 4,4'-(1-메
물질 배출량조사)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에틸벤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해당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허 : 해당 없음
가 대상(한국 화학물질 등
특평가법 제2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해당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해당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유
독물질의 지정)

한국의 기존 화학물질목록 :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 : 해당 없음
고대비물질)

